

자치제도개선토론회 구성 결의(안)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2년 9월 13일
발의자 : 강성희 의원외 1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50조,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련있는 각종 제도 및 법규에 관한 실태조사와 목포시의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을 위한 각종 방안에 관한 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,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제도의 각종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하여 개선 및 제도개혁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활동기간 : 본회의 의결일 부터 - 2003년 3월 26일까지(6개월)
- 나. 구성인원 : 7명
- 다. 사무국 직원 : 김 광 율 전문위원, 담당직원 염 상 민
- 라. 특별위원회 활동범위
 - 목포시의회의 활동과 관련있는 각종 제도 및 법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
 - 목포시의회 현행 열린의회상 정립에 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
 -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제도 조사 및 연구
 - 타 시 · 군 및 행정자치부, 국회, 해외사례 등 현지방문 및 조사

3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
 -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
 -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내지제9조